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서-

2019. 3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개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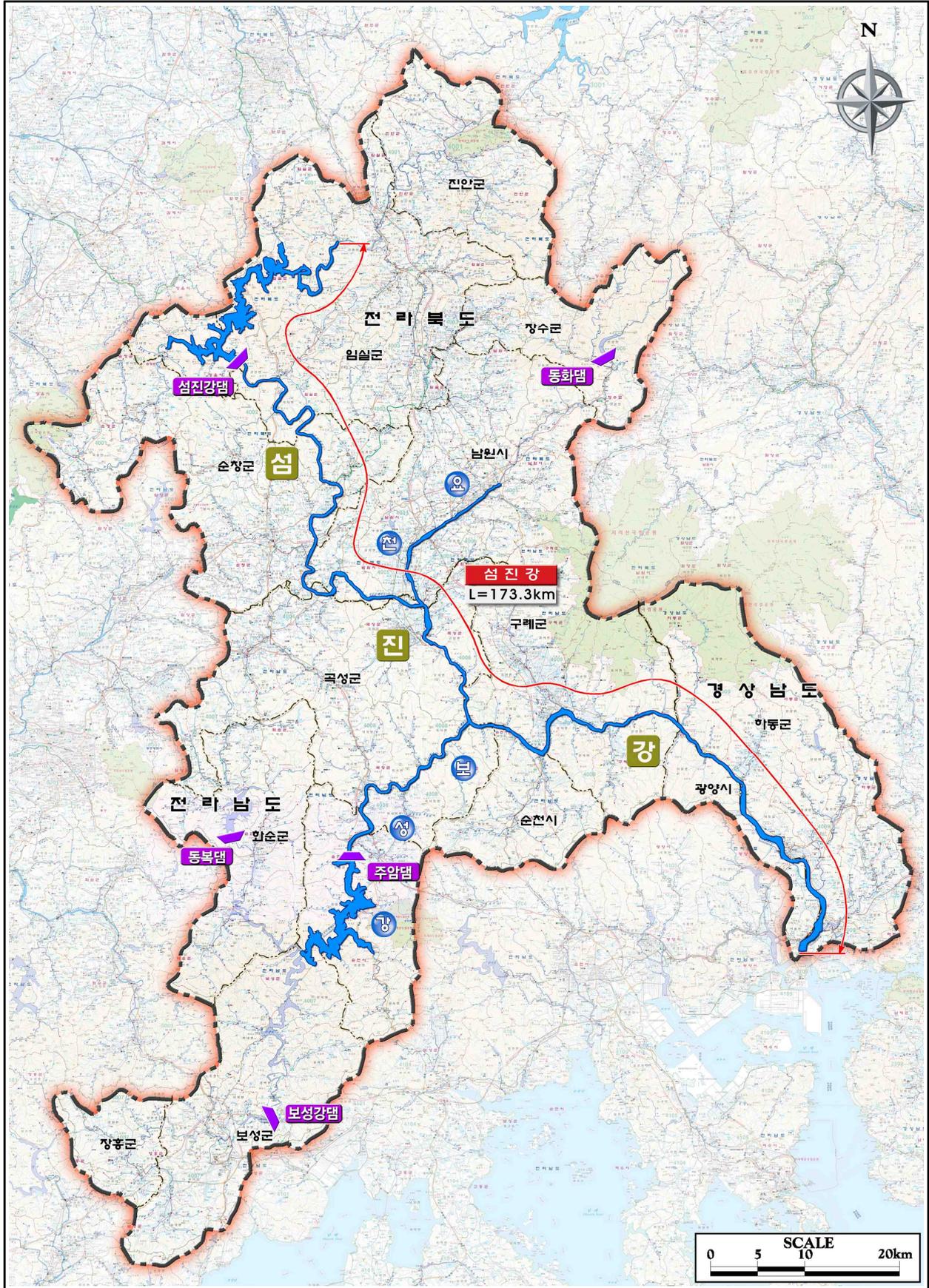
-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의 유량, 수질·생태 및 이용현황 등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 및 친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1.2 계획의 내용

- 과업명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과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계획수립 후 10년
- 공간적 범위

<표 1.1-1> 과업범위 및 위치

하천명	하천등급	과업구간		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섬진강	국가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 합류점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점 (52.2m)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전남 광양시 태인동)	173.3	



(그림 1-1) 과업구간 위치도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 섬진강 관련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하천 총 연장은 173.3km임.

<표 2.1-1> 섬진강 관련 행정구역

구분	도	시·군	읍·면동
섬진강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남원시	금지면, 대강면
		임실군	운암면, 신평면, 관촌면, 덕치면
		순창군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동계면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진월면, 다압면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입면, 풍산면
		구례군	구례읍, 토지면, 악양면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악양면, 하동읍, 고전면, 금성면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 공사시 하천내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주요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하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계획하천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 산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계획하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치는 경관변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하천 정비로 인한 계획 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 하천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지역 (500m 이내)
		소음진동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지역 (200m 이내)
		토 양	○하천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계획하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분석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하천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계획 하천의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수환경의 보전	○ 수질,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표 3.1-2>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결정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중점평가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중점평가 ○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중점평가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락
	경 관		중점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지표저질)	중점평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이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중점평가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파악
		해양환경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경미

<표 3.1-2 계속>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결정결과	사 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일반평가	○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평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일반평가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중점평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평가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자원순환		중점평가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중점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변화 없음
		산업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정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2-1>과 같으며,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

<표 3.2-1> 평가 범위 및 방법의 선정 및 사유

평가항목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		검토내용
		지역(범위)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지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공사계획평면도	○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경관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질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현지 및 문헌조사 ○ 수리·수문 해석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 현지 및 문헌조사	○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대기질			
	토양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소음·진동 예측식 -거리감쇠 공식	○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원단위 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토지이용 현황 파악
			○ 사업계획 분석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3.3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계획

- 본 계획에 대한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는 현지조사와 기존 자료(“국가수질 측정망”,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활용할 계획임

<표 3.3-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지점	횟수	비고	
환경질 측정	대기질	○ 현지조사 -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 총 8개 항목	7지점	2회	
		○ 자료활용 ²⁾ - PM-10, NO ₂	4지점	-	
	지표수질	○ 현지조사 - 유량 1개항목	7지점	3회	
		○ 자료활용 ¹⁾ -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Cd, As, CN, Hg, Pb, Cr ⁶⁺ , ABS 등 총 18개 항목	7지점	-	
		○ 자료활용 ²⁾ - pH, BOD, COD,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Cd, As, Hg, ABS 등 총 13개 항목	10지점	-	
	하천저질	○ 현지조사 -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기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Ni 등 총 14개 항목	17지점	1회	
소음·진동	○ 현지조사 - 소음, 진동	7지점	2회		
	○ 자료활용 ²⁾ - 소음, 진동	4지점	-		
동·식물상조사	육상 동식물상	○ 자료활용 ²⁾ - 식물상과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	
	육수 동식물상	○ 자료활용 ²⁾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	-	

비고: 1. 자료활용¹⁾ : 국가수질 측정망(동계, 임실, 계산, 구례, 덕은, 악양, 추령천)

2. 자료활용²⁾ :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4.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p>「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4.2 의견수렴 계획

4.2.1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과업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4.2.2 평가서 초안 공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4.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구 분	공람장소(안)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9개 시·군

4.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 략 ~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4.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도지사(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관할 시장·군수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p>「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5.1.1.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 구상안
 -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그 밖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내용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 실시
- 협의회 구성위원

연번	구분	소속	성명	비고
1	위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양 ○ ○	행정기관
2	위원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공사와	이 ○ ○	행정기관
3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협의기관
4	위원	정읍시 건설과	최 ○ ○	지자체
5	위원	순천시 환경보호과	민 ○ ○	지자체
6	위원	광양시 환경과	이 ○ ○	지자체
7	위원	푸른곡성21	박 ○ ○	민간전문가
8	위원	구례군 환경교통과	유 ○ ○	지자체
9	위원	하동군 환경보호과	박 ○ ○	지자체
10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박 ○ ○	협의기관 추천전문가
11	위원	(주)건화 환경평가부	김 ○ ○	전문가
12	위원	정읍시 산내면 이장 협의회	강 ○ ○	주민대표
13	위원	황전면 비촌마을 이장	김 ○ ○	주민대표
14	위원	광양환경운동연합	백 ○ ○	주민대표
15	위원	5대강	강 ○ ○	주민대표
16	위원	푸른구례21	오 ○ ○	주민대표
17	위원	섬진강 손틀방류 생산자 연합회	이 ○ ○	주민대표
18	위원	새만금지장환경청 환경평가과	정 ○ ○	관할 지방환경청

5.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이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섬진강에는 침실습지, 섬진강 수달서식지 등의 법정보호구역 및 법정보호종이 많이 분포함 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구역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의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섬진강은 해당 시·군이 많이 산재하여 이해 당사자가 많으므로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지 공람장소를 최대한 많이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공람장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음
6. 기타사항 ○ 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심의의견	조치계획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섬진강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해당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음
<p>2. 대안 및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개수 외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방어(조절)대책 등), 하천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거점, 근린)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도면 등)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지구지정 현황 및 계획 비교 ●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 제시 - 치수안정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 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 공간관리를 위한 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하천저질은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음 -하천저질은 오염평가기준에 따른 모든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계절별 현지조사를 각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번식기·산란기·생육이 왕성한 시기 등을 포함할 것)에 적정한 위치에서 실시 -동·식물상 각 분류군 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 조사구역, 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법정보호종의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 등에 대한 문헌조사(“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생태현황 조사는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기존 문헌자료 인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용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산정, 계획홍수량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수량·수위 산정 시 유역의 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도록 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5,000 ~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 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 제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의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경관시물레이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별로 경관시물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임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 및 그림·시물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제4의2호에 따라 해당계획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새만금지방환경청)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 후 재심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의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심의를 시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고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 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정읍시 건설과 최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며, 하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며, 하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상위 계획과의 일관성, 타 행정계획과의 연관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선정	○ 상위 계획과의 일관성, 타 행정계획과의 연관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겠음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수질보전, 생물다양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등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검토 하여야함	○ 사업시행시 수질보전, 생물다양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등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신문공고 및 공람, 주민설명회 등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야함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 각종 도면은 육안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각종 도면은 육안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제시하겠음

■ 순천시 환경보호과 민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	○ 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항목을 선정하고 시기, 지점 등 작성규정에 따라 설정 및 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대상지역 설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 후 의견을 반영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 보전지역내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하천지구내 시설물 설치시 주변경관 영향을 최소화	○ 섬진강 보전지역내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하천지구내 시설물 설치시 주변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도로 등의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하천생태계 보호대책을 수립	○ 사업시행시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하천생태계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광양시 환경과 이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중 광양시 다압면 누락됨(15페이지)	○ 사업 대상지역 중 광양시 다압면 포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섬진강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 하천 유지 수량이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섬진강 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019.2 발주예정)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계획 수립 요망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필요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사항 ○ 하천의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수량 못지않게 수질이 중요함에 따라 현재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중인데 상류지역에 비해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 ○ 따라서 상류지역에서 수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하류지역은 개선의 여지없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업시행시 수질오염총량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푸른곡성 21 박 ○ ○ : 의견 없음

■ 구례군 환경교통과 유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평가서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 및 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 강구 시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기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 및 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생태계 및 수질현황 조사는 해당 하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공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실시	○ 생태계 및 수질현황은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국가수질 측정망을 활용할 계획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계획하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적극 반영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 계획수립 및 평가시 이용되는 자료는 최신자료 이용 <표 3.3-12>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 지역 지정 현황 최근 기준(2009.1.1부터 적용) 적용	○ 계획수립 및 평가시 이용되는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도록 하겠음

■ 하동군 환경보호과 박 ○ ○

심의의견	조치계획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5page 행정구역 : 경상남도 화개면, 악양면, 하동읍, 고전면, 금성면 수정 ○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간접영향권 지역도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 정확한 평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수정하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검토하겠음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
<p>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항목별로 평상시와 공사시를 구분하여 예측하고 시기별, 항목별 저감방안을 적절히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항목별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의 유출로 인하여 섬진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하류의 재첩서식지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구역별로 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저감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섬진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공사구역별로 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킨 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p>6.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는 우리군 섬진강 수계 섬본E·F지역이므로 수질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을 협의하도록 하겠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박 ○ ○

심의의견	조치계획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국가하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과업연장 173.3km)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설계빈도의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철거계획을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이 자연경과 및 생태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결된 구간의 경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현황 조사는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기존 문헌자료 인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용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의 경우 이를 평가하도록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p>2. 대안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계획의 유형별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p>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보전과 복원계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자연성이 우수한 하천지형 보호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축제, 보, 호안 등 기존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하천부지 내 경작지 등 수질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경작금지 등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치수계획을 수립은 지양하여야 함. 또한 수계 내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고려하여 하류지역의 치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친수지구는 하천의 자연성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자연성이 우수한 하천지형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부지내 경작지 등 수질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경작금지 등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할 계획이며, 수계 내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고려하여 하류지역의 치수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음 ○ 토지이용현황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이용 및 홍수, 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하천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특히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등의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p>5.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에 관한 획일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계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계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주)건화 환경평가부 김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조사는 기존자료 활용으로 계획하였으나, 생태적 민감지역(습지지역, 수달서식지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의 필요성 검토요망	○ 생태계 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재첩잡이 어업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됨	○ 섬진강재첩잡이어업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정읍시 산내면 이장 협의회 강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제3장 지역개발 지리적현황 표3.1-2 행정구역 위치 중 섬진강수계 내 산내면 매죽리, 능교리, 예덕리 지방하천 자료삽입과 각종통계자료를 정읍시 전체 통계자료보다 섬진강수계에 한정하여 평가준비서 자료수정이 요구됨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반영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산내면 전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산내면들이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에 관심이 많아 주민설명회 개최가 요구됨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 의견 없음	-

■ 황전면 비촌마을 이장 김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해당 마을지역 주민들이 적극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대기질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하는 소음, 대기질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광양환경운동연합 백 ○ ○

심의의견	조치계획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읍·동에서 구체적으로(구간) 세분화가 필요 ○ 간접영향권(계획하천 주변지역) 생활권 입지적 범위에서 하천주변 주민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읍·동에서 구체적인 세분화 및 하천주변 주민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의 72.3% 임야임 만큼 과거 주변지역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 토지이용 주변지역이 비도시지역내 보전관리지역, 녹지면적이 비중도가 높게 조사된 만큼 주변지역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사업구간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대안제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섬진강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수질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을 협의하도록 하겠음
<p>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 내 동·식물 다양성이 존재하여 구역별 대안의 비교 등을 구역내 부정적 영향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계획해당구간 하천과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 등 유기적 관계 훼손여부 등 제시가 필요 ○ 수단방법 대안제시에서 하천 동·식물 안정성을 위해 제방축제, 보축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 내 동·식물 다양성이 조재하여 구역별 대안의 비교 등을 구역내 부정적 영향여부 등을 고려하고 ○ 계획 하천과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 등 유기적 관계 훼손여부 등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하천 동·식물 안정성을 위해 제방축제, 보축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지역특성 파악에서 하천주변 주요 생물서식지 현황도 작성필요 ○ 계획구간 내 수변식생군락 및 보호수, 습지 등 대한 현황을 제시 및 보전방안 수립 필요함 ○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에서 동·식물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4개절 생태조사 필요함 ○ 인위적인 계획보다 자연친화적 등의 하상구조를 훼손하거나 생태교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현황 조사는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기존 문헌자료 인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용할 계획이며, ○ 인위적인 계획보다 자연친화적 등의 하상구조를 훼손하거나 생태계교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음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민설명회와 별도의 주변 마을 권역별 마을단위 사업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p>6.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강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섬진강의 보전가치가 다른 하천기본계획의 장단점 파악하여 현 섬진강의 자연생태보전 의미와 자연경관 의미를 새겨 지속보전 가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p>

■ 5대강 강 ○ ○ : 의견없음

■ 푸른구레21 오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요망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6. 기타사항 ○ 공사시 주민피해 최소화	-

■ 섬진강 손틀방류 생산자 연합회 이 ○ ○

심의의견	조치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하동군 섬진강 일원의 유량감소에 따른 퇴적층 제거	○ 하동군 섬진강 일원의 유량감소에 따른 퇴적층은 치수, 이수, 주민들의 요구사항,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사항 ○ 의견 없음	-

■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정 ○ ○

심의의견	조치계획
<p>□ 총괄의견</p> <p>○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섬진강(L=173.3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이·치수기능 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하천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섬진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이·치수기능 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하천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계획하천 및 인근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설정하여야 함</p> <p>-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하천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반영</p>	<p>○ 계획하천 및 인근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조항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겠음</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하는 지양하여야 하며,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도면포함)하여야 함</p>	<p>○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하는 지향하며, 불가피한 경우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p>
<p>3. 대안</p> <p>○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p> <p>-단순 Action/No Action 비교가 아닌 하천개수의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방어대책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p>	<p>○ 사업계획의 대안은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도록 하겠음</p>
<p>○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 비교·검토하여야 함</p>	<p>○ 사업구간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 비교·검토하도록 하겠음</p>
<p>○ 하상훼손 및 시설물 설치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p>	<p>○ 하천의 하상훼손 및 시설물 설치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중류 및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p>

심의의견	조치계획
<p>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의 타당성’의 최하위 항목은 중점 10개, 일반 3개, 제외 8개로 조정 *중점평가항목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지이용 *일반평가항목 : 기상, 온실가스, 토양 *제외항목 : 악취, 위생·공중보건, 해양환경, 인구, 주거, 산업, 전파장해,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에 따라 조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되,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 - 특히, 동·식물상 조사는 자연 식생이 발달된 산림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 생물서식지 파악 등 구체적·중점적으로 실시 - 기상,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관련 조사시기·지점·항목 및 횟수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며,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하겠음 ○ 생태현황 조사 및 수질현황은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기존 문헌자료 인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조사계획을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 18.12.12)」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검토하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 ● 합류하천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하천 상·하류간 자연스러운 연계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방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침수피해 현황, 지형·지질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검토·제시 ● 일률적인 개수계획을 지양하고, 하폭확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방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침수피해 현황, 지형·지질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검토·제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하천(합류되는 하류수계 포함) 및 주변지역의 범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조사(생육이 활발한 시기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 시기, 조사지점 및 횡수를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사업지역 내 위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별도관리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제시 ● 수변식생군락 등 계획구간 내 보전이 필요한 구간의 구체적인 현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현황 조사 및 수질현황은 2010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기존 문헌자료 인 “섬진강살리기 1·2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용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 구간과 주변경관영향분석(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시행 전·후 비교) 및 저감방안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 구간과 주변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오염원 관리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현지조사)하고, 이와 연계한 하천 내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 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 - 축제, 호안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거 홍수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오염원 관리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이와 연계한 하천 내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하천의 수량·수위 산정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축제, 호안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거 홍수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p>-보, 교량 등 정비계획(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친환경적 생태공법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보 및 낙차공, 교량 설치현황(현장사진 포함)과 준치 및 재가설(신설) 여부,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 •생태계 단절을 막고 다양한 수변식물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호안공법 검토 <p>-상위 수질관리계획(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목표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하천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p>	<p>○ 보, 교량 등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친환경적 생태공법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음</p> <p>○ 상위 수질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하천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p>
<p>○ 환경기준 부합성</p> <p>-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주거밀집 지역 분포현황에 따라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 선정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p>	<p>○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주거밀집 지역 분포현황에 따라 조사지점 선정평가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p>
<p>○ 환경친화적토지이용</p> <p>-하천공간(보전·복원·친수지구)의 구분은 계획하천의 생태적 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농경지, 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수지구 구성에 따른 타당성 및 관련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 제시 <p>-과업하천 및 주변지역 토지현황 조사(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등)</p>	<p>○ 하천공간의 구분은 생태적 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겠음</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p> <p>-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p>	<p>○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p>
<p>6. 기타</p> <p>○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p>	<p>○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p>